

	<b>취업 대책 실무협의회</b>  <b>규정</b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5. 6. 1.
		최종개정일자	2016. 3. 1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취업대책실무협의회(이하 "협의회" 라 한다)의 구성 . 기능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3.1>

**제2조(구성)**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6.3.1>

1. 협의회는 의료보건계열 및 산업체, 훈련기관, 정부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3.1>
2. 회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되며,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3.1>
3. 위원은 학과 취업률 향상 관련 의료보건계열 및 산업체, 훈련기관, 정부기관 등의 실무책임자 중 추천에 의해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6.3.1>
4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1>
5.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6.3.1>

**제3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<개정 2016.3.1>

1. 산업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<개정 2016.3.1>
2.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에 필요한 환경 분석, 프로그램 개발<개정 2016.3.1>
3. 취업·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·평가 등 환류체계 구축<개정 2016.3.1>
4. 기업체, 정부기관, 사회단체 등 취업 유관 기관에 대한 취업촉진 방안<개정 2016.3.1>
5. <삭제>
6.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6.3.1>

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6.3.1>

**제5조(경비)** 협의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1>

**제6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<개정 2016.3.1>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